

2024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

'24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·납부기간 운영 안내

- 대상 : 12월말 결산 법인 ('23년 귀속 법인소득)
- 신고·납부기한 : 2024. 4. 30.(화) 까지
- 건설·제조 중소기업, 수출 중소기업, 고용위기지역 직권연장
: 납부기한 3개월 연장
- 납세지 : 23. 12. 31.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
(다만,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)
- 신고·납부방법 : 위택스 전자(파일)신고·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,우편신고·납부
 - ※ 위택스 홈페이지(www.wetax.go.kr)
 - ※ 장성군청 세무회계과 ☎ 061-390-7286

< 신고·납부시 유의사항 >

- ▶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·납부
- ▶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
- ▶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·감면은 없음
- ▶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·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
-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세요.

<https://www.jangseong.go.kr/home/www/news/jangseong/notice/show/5516>